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10. 2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10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생활환경국장 강용인)

가. 제안이유

- 특별회계 존속기한(2019.12.31)의 도래에 따라 특별회계가 폐지되고, 불안정한 세입(과태료수입)으로 인해 지속적, 체계적 무단투기 예방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의 실익이 미비해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정옥)

- 본 건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. 1. 1.부터 설치·운영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9.12.31.로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폐지조례안임.
- 특별회계는 특수 목적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·운영하는 것으로, 과태료 수입 등 세입 부족 시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의 실익이 미비할 것으로 사료됨. 또한,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구에서만 특별회계를 운용 중으로 특별회계 폐지 및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6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10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특별회계 존속기한(2019.12.31)의 도래에 따라 특별회계가 폐지되고, 불안정한 세입(과태료수입)으로 인해 지속적, 체계적 무단투기 예방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의 실익이 미비해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: 2020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 예정

다. 협의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: 협의 대상 아님
- 2) 인권영향평가: 협의 대상 아님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협의 대상 아님
- 4) 규제심사: 협의 대상 아님

라. 입법예고(2019. 9. 11. ~ 10. 1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
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. 1. 1부터 시행한다.